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두1612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누39362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 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이하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 제1조는 1965년에 체결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등과 친족인 사람 중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제1항), 위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위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제2항)고 정하면서, 유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전에 형성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친족관계가 형성된 원인이 자연적 혈족관계에 의한 것인지 입양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희생자지원법 제8조에서 피고로 하여금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 법상 유족임을 주장하여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가 위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동원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신청인보다 앞서선 선순위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 1. 8. 소외 1의 아버지

대법관 차한성 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